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□ 변경 사유 :

(1) F클래스 가입자격 정정

(2)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추가

(3)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분류기준 변경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14. 3. 16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	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	
		탁의 연혁]	
	-	- 트러스톤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
		2014.3.16. : 투자대상자산 중 환매	
		조건부 매수 추가	
5. 운용전문인력	2013.9.30. 기준	2014.2.28. 기준	
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2013.9.30. 기군	2014.2.26. 기단	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F클래스(펀드코드 : AM522): <u>근로</u>	F클래스(펀드코드 : AM522): 퇴직	
나. 종류형 구조	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	연금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	
	의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자		
	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		
	<u> 자기</u> 구 및 퇴직연금보험		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	<u>트러스톤제갈공명소득공제증권자펀</u>	
다. 모자형 구조	추가 및 삭제	드 : 주식모 50% 미만, 중기채권	
		모 80%이하, 중장기채권모: 80%	
		이하	
		<u> 개형칭기스칸채권혼합 삭제</u>	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	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: 법 시	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: 법 시	
상	행령 제268조 <u>제3항</u> 의 규정에 의한	행령 제268조 <u>제4항</u> 의 규정에 의한	
	거래	거래	
	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	
	-	탁의 주요 투자 대상]	
		- 트러스톤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



		8) 환매조건부 매수
	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중 판매수수	A1-711
	료 및 판매보수 관련 제한	<u>삭 제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		
위험		<u>〈트러스톤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</u>
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	-	<u>험등급 분류기준〉 변경</u>
합한 투자자 유형		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	F클래스 : <u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</u>	F클래스 : 퇴직연금 집합투자기구 및
및 기준가격 적용기준	<u>관련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에 가</u>	퇴직연금보험
가. 매입	입하는 사업자나 근로자를 대상으로	
	<u>하는 집합투자기</u> 구 및 퇴직연금보험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		
한 사항		ロ트거시타에 트거듭나 기트거시타
다.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		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
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	-	및 자투자신탁의 클래스 추가에 따
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		<u>른 보수 및 비용 기재</u>
용		

